경기주택도시공사 평가·심의위원회
후보자 모집공고 및 등록 안내문

[4기 제안서 평가위원·13기 기술자문위원·제2기 설계공모 심사위원·제3기 공공건축심의위원]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과 관련한 각종 제안서의 심사·평가를 위한 ①제안서 평가위원 및 기술자문·심의를 위한 ②기술자문위원, 설계공모안 심사를 위한 ③설계공모심사위원, 공공건축사업 건축기획 심의를 위한 ④공공건축심의위원 후보자를 모집하오니, 관계분야 전문가 여러분의 많은 신청(추천) 바랍니다.

※ 복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나, 제안서평가위원-설계공모심사위원은 중복 위촉 불가

☐ **모집 및 등록 기간** : 공지일로부터 ~ 2022년 11월 11일(금)

☐ **모집공고 및 등록(추천)방법**

- **모집공고 자료 다운** : GH 홈페이지(www.gh.or.kr) ⇒ 정보공개(공고및공지) ⇒ 공지사항 ⇒ 경기주택도시공사 평가·심의 위원회 후보자 모집공고 및 등록 안내 ⇒ 서식 다운 및 작성 ⇒ 이력서 등 관련서류 작성 ⇒ 이메일 송부
- **등록(추천)방법** : 이메일 접수(evaluation@gh.or.kr)

☐ **위원 자격요건 사항**

- **소속기관** : 공무원, 공공기관, 대학(교수) 재직자, 업계 전문가
- **주된 근무지**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충청권(세종·대전·충북·충남)
- **세부자격요건 : "붙임1,2" 참조** ※ **연임 1회에 한함**(단, 공공건축심의는 연임 제한사항 없음)

☐ **모집분야 및 인원 : 27개 분야** (위원회별 모집 전문분야 확인 要)

- **전문분야** : ①도시계획, ②토목시공, ③토질기초, ④도로, ⑤상하수도, ⑥토목구조, ⑦수자원, ⑧토목 BIM**, ⑨건축계획, ⑩건축시공, ⑪건축구조, ⑫건축디자인, ⑬건축 BIM**, ⑭공공디자인, ⑮교통, ⑯조경, ⑰전기, ⑱전기통신, ⑲기계설비, ⑳환경, ㉑소방**, ㉒조경 BIM**, ㉓MEP BIM**, ㉔건설안전 및 재난, ㉕재무*, ㉖마케팅*, ㉗사업관리*

*** 제안서평가위원회에만 해당 : ㉕재무, ㉖마케팅, ㉗사업관리**

**** 기술자문위원회에만 해당 : ⑧토목 BIM, ⑬건축 BIM, ㉑소방, ㉒조경 BIM, ㉓MEP BIM**

① 제안서평가위원회 모집예정 인원(510명)

구분	토목 (125)						건축 (135)			
	시공	도로	토질	상하수도	구조	수자원	계획	시공	구조	디자인
인원	30	20	30	20	20	5	50	50	30	5

구분	기타 (250)											
	공공 디자인	도시 계획	교통	조경	전기	정보 통신	기계 설비	환경	건설 안전	재무	마케팅	사업 관리
인원	5	25	5	30	30	15	30	20	30	20	20	20

② 기술자문위원회 모집예정 인원(320명)

구분	토목 (105)							건축 (75)				
	시공	도로	토질	상하 수도	구조	수자원	BIM	계획	시공	구조	디자인	BIM
인원	25	15	15	15	15	5	15	10	25	20	5	15

구분	기타 (140)											
	공공 디자인	도시 계획	교통	조경	전기	정보 통신	기계 설비	환경	건설 안전	소방	조경 BIM	MEP BIM
인원	25	5	10	5	20	15	10	20	15	5	5	5

③ 설계공모심사위원회 모집예정 인원(100명)

구분	건축계획/설계
인원	100

④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모집예정 인원(42명)

구분	건축계획/설계	도시계획	조경
인원	30	5	7

□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024.12.31.까지
(단,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2025.12.31.까지)

□ 위촉방법 및 결과 안내

- 위촉방법 : 서류심사 후 위원회별 별도 위촉

※ 위원회별 필요 전문분야 및 자격사항 등 고려하여 별도 위촉(위원회 동시 위촉 가능)

- 결과안내 : 홈페이지 공지 및 위원별 이메일 등 안내

□ 작성 주의사항

- 이력서 양식의 1번(성명) 부터 ~ 15번(개인정보활용동의서) 까지 빠짐없이 작성
- 이력서 양식에 '증명사진' 파일 반드시 첨부
- 별도 첨부된 [붙임5]의 이력서 양식(총 3장)을 작성하여 출력하여 "서명"
- "이력서 엑셀파일"과 "서명한 스캔파일"을 모두 이메일에 첨부하여 송부
  ※ 이메일 첨부시 학위증명서, 자격증, 재직증명서('22년10월19일 이후 발급분) 등 관련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력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증빙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후보위원 위촉 검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문의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건설기술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평가·설계공모심사·공공건축심의] ☎ 031-220-3512~3514,3214
[기술자문] ☎ 031-220-3228

붙 임 1. 위원회별 후보자 자격요건 1부
2. 후보자등록 세부 입력기준 1부
3. 위원 전문분야 분류표 1부
4. 위원 후보자 등록 이력서(작성양식) 1부
5. 위원회 운영 관련 법령 1부. 끝.

「붙임 1-1」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자격요건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기술직렬로서 5급 이상이거나 기술사·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6급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 관련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건설업무관련 기술직렬의 부장 이상, 기술사·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3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중 건설 관련 분야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부장 이상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3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5.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원
6.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의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
7. 해당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같은 분야에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8. 해당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같은 분야에 9년 이상의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9.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 취득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10. 제1호~ 제6호에 해당하는 공공 및 학계 근무자 중 재무, 마케팅, 사업관리분야별 관계전문가
11. 그 밖의 해당분야에서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격기준과 비교하여 동등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실무경험이 있다고 公社 사장이 인정하는 사람

「붙임 1-2」

기술자문위원 후보자 자격요건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기술직렬로서 4급 이상이거나 기술사·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 관련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건설업무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기술사·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중 건설 관련 분야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5.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원
6.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의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
7. 해당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같은 분야에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8. 해당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같은 분야에 9년 이상의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9.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 취득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10. 그 밖의 해당분야에서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자격기준과 비교하여 동등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실무경험이 있다고 公社 사장이 인정하는 사람

「붙임 1-3」

설계공모심사위원 후보자 자격요건

1. 국내외 건축사 자격자로서 자격취득 후 건축설계분야에서 5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의 건축계획 및 설계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분야의 5년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3. 설계공모로 조성하고자 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특성상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公社 사장이 인정한 사람

「붙임 1-4」

공공건축심의위원 후보자 자격요건

1.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건축설계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도시 또는 조경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또는 조경 분야의 대학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4. 건축 관련 공인된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건축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또는 조경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각 호의 실무경력 또는 교육경력을 산정할 때에는 같은 호에서 규정한 자격 · 학위를 취득하거나 직위를 부여받기 전의 실무경력 또는 교육경력을 포함하여 산정

「붙임 2」

후보자 등록 세부 입력기준

※ 작성방법 : 엑셀파일의 파란색 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노란색 칸은 클릭 후 해당사항을 선택합니다. 하얀색 칸은 직접 입력합니다.
"□" 칸은 클릭하면 "☑"표시로 변환됩니다.

1. **성명** ~ 3. **연락처는** 서식에 의거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십시오.

4~5. **전문분야 및 세부전공분야는** 본인의 전공학과와 세부전공과목, 자격증 보유, 현직의 담당업무 등을 종합하여 후보자 본인의 전문분야를 기재하되, "붙임3"의 **「위원 전문분야 분류표」**에 해당되는 분야에 따라 다음 예시와 같이 기재합니다. (1순위 필수 기재, 2순위 선택 기재)

예시)

4. 전문분야	1순위	건축계획 (항목 중 선택)	2순위	건축시공 (항목 중 선택)
5. 세부전공분야		설계 (수기 텍스트 입력)		품질관리 (수기 텍스트 입력)

6. **직업군** ~ 7. **직장현황은** 서식에 의거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십시오.
- **직업군** : 학계(대학), 공무원, 공공(공기업, 준정부기관, 연구기관, 지방공기업), 기타
- **직 급** :

구분	학계(대학)	공 무 원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 타
직위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	6급 이상 등	부장 이상, 3급 이상, 전문위원 등	수석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소속기관의 직급(또는 직위) 기재

8. **소속학회, 가입 NGO는** 활동 중인 단체가 있을 경우 해당 명칭과 직책, 업무를 기재합니다.

9. **학력현황은** 대학 이상의 학력만 기재하시고 학위구분은 박사, 석사, 학사 등의 최종학력 순으로, 졸업구분은 졸업, 수료, 재학으로 기재
(※**고졸 이하의 경우,** 최종출신 학교 기재)

10. **자격증은** 국가공인기관이 발급한 자격증소지자에 한하여 종목 및 등급을 기술사(건축사), 기사, 산업기사 등의 상위등급 순으로 기재합니다.

11. **경력현황은** 상기"4항"의 **전문분야와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근무처, 직위, 주요 업무경력 위주로 기재하여 전문분야 확인이 가능토록** 하여야 합니다.

12. **주요저서 및 논문현황**은 상기 "4,5항"의 본인의 전문분야와 관련된 주요 저서 및 논문, 특허(신기술 등) 등 **제목과 주요내용을 기재**하여 **전문분야 확인이 가능**토록 하여야 합니다.
(※ 주요저서 및 논문이 없을 경우 "없음"을 선택하시고, 작성란이 부족할시 첨부된 양식 또는 별도의 양식을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13. **자격사항**은 1번~11번까지 **해당하는 자격사항에 대하여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사항 중 **1개 항목 이상** 해당사항이 있으면 후보자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체크도 가능**합니다.

14. **위촉 희망 위원회**는 **제안서평가, 기술자문, 설계공모심사, 공공건축심의 중 우선순위 순서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촉 희망 위원회는 위원회별 위원 자격요건 검토시 참고사항으로, 우선순위 희망 위원회에 위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5. **개인정보활용동의서**는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 제3자 제공동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신 후 **동의사항에 체크**하여 주시고 **성명 및 서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증빙파일은 1개의 파일로 통합(".zip" 형태)하여
이메일(evaluation@gh.or.kr)로 송부(파일명 : 도시계획 홍길동)

○ 이메일 송부자료 :
① "이력서 엑셀파일(총 3장)" (*. Excel)
② "이력서 출력하여 서명한 스캔파일(총 3장)" (*. pdf)
③ 학위증명서, ④ 자격증(사본), ⑤ 재직증명서('22년 10월 19일이후 발급분)
⑥ 경력증명서(해당자만), ⑦ 저서 및 논문(해당자만)

○ 입력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증빙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후보위원 위촉 검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붙임 3」

전문분야 분류표

전문분야		세부전공분야
분류	소분류	
도시	01 도시계획	도시계획, 도시설계, 단지설계
토목	02 토목시공	토목시공, 공사관리, 품질관리 등
	03 토질 및 기초	지반, 사면, 터널, 토질기초 등
	04 도로	도로계획, 도로설계, 측지 및 측량, 포장 등
	05 상하수도	상수도, 하수도, 공업용수계획, 하수처리, 수질처리, 정수처리, 폐수처리 등
	06 토목구조	강구조, 콘크리트구조, 내진 및 구조해석, 합성구조 등
	07 수자원	하천, 수자원, 수리구조 등
	08 토목 BIM	토목 BIM
건축	09 건축계획	건축계획, 건축설계, 건축환경 등
	10 건축시공	시공기술, 시공재료, 시공관리, 품질관리 등
	11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건축기초구조, 구조역학 및 해석 등
	12 건축디자인	실내건축, 실내디자인, 인테리어, 가구 등
	13 건축 BIM	건축 BIM
기타	14 공공디자인	색채, 공공, 환경, 시각, 경관조명 및 환경조명 등
	15 교통	교통계획, 교통운영, 교통시설 및 안전, 교통경제, ITS 등
	16 조경	조경계획, 조경설계, 조경식재 등
	17 전기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력설비, 전기소방 등
	18 정보통신	홈네트워크, 스마트시티, U-city 등
	19 기계설비	냉난방설비, 위생설비, 환기설비, 공기조화설비, 방재설비 등
	20 환경	대기,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토양·환경관리 등
	21 소방	소방(기계분야), 소방(전기분야) 등
	22 조경 BIM	조경 BIM
	23 MEP BIM	MEP BIM
	24 건설안전 및 재난	안전진단, 방재, 지진, 소방, 건축안전, 토목안전 등
	25 재무	사업비 산정·검토, 재원조달 분석, 임대관리계획 등
	26 마케팅	브랜드활용계획, 분양활성화계획, 홍보 및 공급계획 수립 등
	27 사업관리	사업리스크 분석, 관리운영, 고객관리, 입주관리, 민원처리 등

「붙임 4」 ※ 이력서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첨부된 엑셀파일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제안서 평가위원·기술자문위원 등 후보자 등록 이력서

1. 성 명	한 글	홍길동	성 별	남	생년(년,월,일)	1968	3	5
2. 자택 주소	지 역	경기	상세주소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3. 연 락 처	휴대전화	010-1234-1234		이메일	gh1234@korea.kr			
	직 장	031-220-1234		자 택	031-123-1234			
4. 전문 분야	1순위	건축계획	2순위 (선택사항)	건축시공	6. 직 업 군	공무원		
5. 세부전공분야		설계		품질관리	(분류 : 학계(대학) / 공무원 / 공공기관 / 기타)			
7. 직장현황	직장(대학)명	경기도청	부서(학과)	주택정책과	담당업무	경기도발전업무		
	직 급	4급	직 위	과장				
	주소 지역	경기	상세주소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1길				
8. 소속학회, NGO명	학회(NGO)명			직책 및 업무				
9. 학력사항	학위취득(년,월)	출신학교	학위구분	졸업구분	전공분야			
(최종학력부터 기재)	2012 2	K대학교	박사	졸업	건축설계 전공			
	2008 8	J대학교	석사	졸업	건축공학 전공			
	2000 3	S대학교	학사	졸업	건축공학 전공			

10. 자 격 증 (상위등급부터 작성)	취득년월	자격증명	등 급	자격증번호	인가.관리기관
	2011 3	건축시공기술사	기술사	123456N	경기도 발전업무
	2001 1	건축기사	기사	258963F	건축시공 업무

11. 경력사항 (별지양식 사용가능)	근무기간				근무처	직 위	주요업무내용
	2004 3		현재		경기도청	과장	경기도 발전업무
	2001 1		2004	2	K엔지니어링	대리	건축시공 업무

12. 주요저서 및 논문 (별지양식 사용가능)	제출년월	출판사.관련학회	논문명	주요논문내용
	2018 2	KK출판사	고층건물 강구조 설계방안 연구	유형별 설계방안 등

증명 사진	상기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것을 서약합니다.
	2020 년 10 월 20 일
	작성자 :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첨 부 : 자격사항 체크, 경력사항, 주요저서(별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1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13. 자격사항 체크 (중복체크 가능)

※ 자격사항 중 1개 항목 이상 해당사항이 있으면 후보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체크	항목 번호	자격사항 내용 (후보자 등록 안내문 참고하시어, 위원회별 중축 자격요건 확인 후 선택요망)
☐	1-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기술직렬로서 5급이상이거나 기술사,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6급 공무원
☑	1-2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기술직렬로서 4급이상이거나 기술사,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공무원
☐	2-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 관련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부장 이상, 기술사 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3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	2-2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 관련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 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	3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중 건설 관련분야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	4-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부장 이상 또는 기술사 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3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	4-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 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	5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원
☐	6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의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
☐	7	해당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같은 분야에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8	해당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같은분야에 9년 이상의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9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 취득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10	제1호~ 제6호에 해당하는 공공 및 학계 분야 근무자 중 재무, 마케팅, 사업관리 분야별 관계전문가
☐	11	국내외 건축사 자격자로서 자격취득 후 건축설계분야에서 5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12	대학의 건축계획 및 설계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분야의 5년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	13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건축설계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4	도시 또는 조경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5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또는 조경 분야의 대학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	16	건축 관련 공인된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건축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7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또는 조경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4. 위촉 희망 위원회

※ 복수 위원회 위촉 가능하나, 제안서평가위원-설계공모심사위원은 중복 위촉 불가

※ 희망 위원회는 자격요건 검토시 참고사항으로, 우선순위 희망 위원회에 위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순위	제안서평가	2순위	기술자문	3순위	

15.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동의함에 체크 및 성명, 서명 작성)

①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공사는 위원 후보자 신청 등록 접수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성명(한글,한자), 자택주소(현거주지), 연락처(휴대폰, 자택전화, 직장전화, 메일주소, 팩스번호), 직장명, 직장주소, 부서명, 직위, 직급, 직렬, 학회(소속NGO)명, 학회(소속NGO) 직책 및 업무, 학력현황, 자격증 보유현황, 전문분야, 세부전공분야, 경력현황, 주요저서 및 논문 등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공사는 다음 사항에 대한 **위원 구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건설기술용역 및 민간사업자공모의 제안서 평가
2. 공사가 시행하는 각종 건설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 및 자문,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3.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 평가

공사는 상기 수집 목적에 해당되는 사안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합니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후보자 등록신청 시점부터 위원 선정 및 위촉 후 임기종료 시까지 보존하며 임기종료 후 파기합니다.

(위원 임기는 **2024.12.31.(공공건축심의위원에 한하여 2025.12.31.)까지**이며, 연임 시는 연임시기 종료 후 파기함)

※ 임기 중 보강하여 구성하는 경우의 해당자는 잔여임기동안 보유 및 이용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해당란에 √표시)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자 확인 : 성명 홍길동 (인 또는 서명)

②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홈페이지 게시를 통하여 **전문분야, 소속, 성명**을 제3자에게 정보 제공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불특정다수 (홈페이지 게시)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전문분야별 위원 명단 현황 참조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전문분야, 소속, 성명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홈페이지 게시 기간 **[위원 임기 2024.12.31(공공건축심의위원에 한하여 2025.12.31.)]까지**이며, 연임시는 연임기간을 포함함)

※ 임기 중 보강하여 구성하는 경우의 해당자는 잔여임기동안 게시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홈페이지 게시)에 동의하십니까?(해당란에 √표시)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자 확인 : 성명 홍길동 (인 또는 서명)

「붙임 5」

위원회 운영 관련 법령

□ 제안서평가

<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국토부 훈령) >

제7조(사업계획서 등 평가)

④ 지구조성 평가위원회 위원은 토지이용·도시·교통·환경·금융·주택·건설 등 분야별 관계전문가와 공공시행자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으로 20인 내외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호선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 평가)

④ 주택건설 평가위원회 위원은 건축·도시·주거복지·문화예술·금융·주택·건설 등 분야별 관계전문가와 공공시행자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으로 균형있게 15인 내외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호선한다.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① 발주청(영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9조 및 제30조에서 같다)은 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용역비가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제2항에 따라 평가하는 용역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할 것

가. 기본계획,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별표 2 제1호에 따라 평가(영 제5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가격입찰이 끝난 후에 평가한다)

나. 건설사업관리: 별표 3 제1호에 따라 평가

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에 대하여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기술인평가서 또는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그 용역별로 각각 구분되어 있는 기술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대상용역

가. 공공의 안전확보 및 역사문화 보전 등을 위하여 기술인의 특별한 경험과 기술력이 필요한 건설기술용역

나. 국내 실적이 많지 아니하거나 복합공종, 입지, 지반조건 및 인접시설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건설기술용역

다. 신기술·신공법 및 친환경 건설기법 등 기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한 평가가 필요한 건설기술용역

2. 기술평가 기준 및 방법

가. 용역비가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인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와 용역비가 1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인 실시설계: 별표 2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인평가서를 평가할 것

나. 용역비가 15억원 이상인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와 용역비가 25억원 이상인 실시설계: 별표 2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평가할 것

다. 용역비가 2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별표 3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평가할 것. 다만, 시공 단계에서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포함하여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라 한다)는 별표 3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기술인평가서를 평가할 것

라. 용역비가 2억원 이상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별표 4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인평가서를 평가할 것

□ 기술자문위원회

< 건설기술진흥법 >

제1장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기술자문위원회)

①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기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기술자문위원회 기능]

<심의>

①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 심의

②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심의

③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 변경의 적정성 심의

④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 심의

⑤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

⑥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등 포함)

⑦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또는 변경의 적정성

⑧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심의

⑨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사장이 자문하는 사항 심의

<설계변경 심의>

⑩ 건설공사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

<기술적 자문>

⑪ 심의대상 외 기술적 자문 시행

※ 경기주택도시공사 기술자문위원은 용역평가(설계용역,건설사업관리용역), 시공(중)평가 등의 위원으로 동시 위촉 가능함

□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심사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

① 발주기관등은 공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발주기관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추천자 중에서 위촉한 5~9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발주기관 소속 임 · 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발주기관등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을 1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등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호의 자격을 갖춘 소속 임 · 직원은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제10조제3호 및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의 총 인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중략…

⑧ 발주기관등은 설계공모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한 사항의 검토 및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설계공모 방식
2. 설계공모 일정
3. 설계공모 지침(안)
4. 심사위원, 심사방식 등 심사위원회 운영
5. 그 밖에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⑨ 발주기관등은 심사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심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⑪ 발주기관등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고 시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공공건축심의위원회) ①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공공기관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가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우: 「건축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 다만, 지역건축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두는 건축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②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기획의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설계용역 과업 내용의 적정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해당 건축물등의 설계 및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한다.